
「혁신성장펀드」 2024년 1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FAQ

[혁신산업펀드, 성장지원펀드 공통]

2024. 4. 26.

한국산업은행
신한자산운용
한국성장금융

||| **목 차** |||

1. LOC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1
2. LOC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1
3. 개인의 LOC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
4.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2
5. 책임투자 평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은?	2
6. 공고문 상 약정총액의 의미는?	2
7.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	3
8. 병행펀드 설정 시, 관리보수 구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3
9. Catch-up 방식 성과보수 제안이 가능한지?	3
10. 제안펀드 결성 전,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	4
11. 정부재원 활용 펀드(모태펀드) 등 출자사업에 공동출자 가능한지?	4
12. 출자제한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4
13.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전·후방산업 투자도 포함되는지?	4
14.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사업을 영위코자 투자 받을시 주목적 인정 가능한지?	5
15.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 및 주기는?	5
16.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	5
17.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	5
18.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	6
19.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	6
20. 1차 사업 선정 운용사가 2차 사업예정에 지원 가능한지?	6

21.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허용하는지?	7
22.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	7
23. Co-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	7
24.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회수금액 기재 방법은?	7
25. 우선선정 분야 선택시 선발 발식은?	8
26. 순수해외투자자와 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의 차이는?	8
27. 주목적 투자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정의는?	9
28. 성장지원펀드에서 '기업당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의미?	9
29. 민간출자자 희망시 인센티브 제외 가능여부?	9
30. 주목적 투자비율 계산방법은?	9
31. 최다출자자의 정의?	10
32. 병행펀드 구조 고려시 제안서에 기재 여부?	10
33. 병행펀드 결성일은 반드시 제안펀드보다 앞서야 하는지?	10

Q1. 출자확약서(LOC)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제안서 접수일까지 제출
- 단, 접수일 이후 LOC를 발급 받는 경우 구술심사 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고목적으로만 활용

Q2. 출자확약서(LOC)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의 양식을 사용하되 각 출자기관 고유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본건 출자사업 목적상 LOC 기재내용(기간, 투자대상, 투자 조건, 유효기간 등) 등이 적합한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특히, 출자확약서(LOC) 유효기간이 본건 출자사업 펀드 결성시까지 유효해야함

Q3. 개인의 출자확약서(LOC)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개인의 LOC는 운용사 소속인력에 한하여 인정

**Q4. 경력확인 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양식에 전 직장 대표이사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 투자관련 경력의 경우, 공고된 서식에 따라서 경력증빙 제출 필요
 - 대표이사 날인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날인으로 갈음 가능(심사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확인 가능해야 함)

- 투자 외 경력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제출

* 참여운용인력 경력사항 제출시 재직일자 등은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

**Q5. 책임투자(ESG, 스투어드십코드) 관련한 평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은?**

- 책임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운용사가 책임투자 도입현황 및 계획 등을 각 주관기관별 제출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 가능 (스튜어드십코드 참여현황 등도 포함)
 - 현재 책임투자 관련 내규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규 및 제도 구축현황, 투자의사결정 체계 등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재
 - 도입추진중 또는 향후 도입 계획의 경우, 도입계획, 실현방안, 일정 등을 기재

Q6. 공고문 상 약정총액의 의미는?

- 펀드의 최종 약정총액(증액하는 경우, 증액금액 반영)을 의미하며, 병행펀드가 있는 경우 병행펀드의 약정총액까지 합산함

Q7.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혁신산업펀드 1안 기준)

☞ 최종 펀드 결성총액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관리보수율 적용 방식(예시)>

[약정총액 1,500억원 /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 투자잔액 200억원인 경우, ①, ② 합산]

① 1,000억원 중 200억원(투자잔액) 1.6% 이내, 나머지 800억원은 1.4% 이내

② 500억원은 0.9% 이내

* 1,300억원(약정총액-투자잔액) 중 1,000억원에 1.4% 적용, 300억원에 0.9%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

구 분*	≤1,000	≤2,000	≤3,000	3,000<
투자잔액	1.6% 이내	1.1% 이내	0.6% 이내	0.5% 이내
(약정총액-투자잔액)	1.4% 이내	0.9% 이내		

* 펀드성립일로부터 2년간 :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투자잔액) 기준 / 2년~존속기한 : 투자잔액기준

Q8. 병행펀드 설정 시, 관리보수 구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병행펀드의 약정총액을 합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함

Q9. Catch-up 방식 성과보수 제안이 가능한지?

Catch-up 방식 성과보수 제안은 '아래'의 성과보수 조건 범위 이내로서, 타 출자자 출자조건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 아 래 -

○ 기준수익률 (Catch-up 선택시)

- 내부수익률(IRR) 기준 9% 이상 제안 (혁신산업펀드/ 성장지원펀드 공통)

○ 성과보수 조건 (Catch-up 선택시)

- 기준수익률 초과시 총 누적이익의 20%, Catch-up 40% 이내

Q10. 제안펀드 결성 전,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함

- 아울러, 병행펀드는 본 건 제안 펀드와 동일한 프로세스(동일 투자대상, 동일 비율, 회수 등)로 운용해야함

Q11. 정부재원 활용 펀드(모태펀드) 등 출자사업에 공동출자 가능한지?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모태펀드(운용사 :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출자 불가함

Q12. 당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출자제한 1년을 받은 상황인데, 금번 지원과 관련하여 1년의 산정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주관기관의 제재사항(공고문 4.제재 사항 및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운용사 판단기준일은 접수일(2024.5.2.(목)) 기준

Q13.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전·후방산업 투자도 포함되는지?

혁신성장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위해 전·후방산업* 투자도 인정

* (전방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 (도·소매, 단순 운송 등 제외)

(후방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단, 범용성 부품 제외)

자세한 사항은 KDB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www.newgi.org)내 “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5차 개정)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 앞 별도 문의

Q14.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투자를 받을 경우 주목적투자로 인정받는지?

-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아닌,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

Q15.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 및 주기는?

- 대상 : 혁신성장펀드 자펀드 전체
- 주기 : 반기별 평가

Q16.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

- 최근년도 기준 감사보고서(또는 가결산보고서) 장부가액으로 기재
- * 최근년도 감사보고서(또는 가결산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정가치 금액은 미인정

Q17.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

- 각 펀드 감사보고서 내 사용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치 반영

비상장기업 (가)기업을 2개의 펀드(A펀드, B펀드)에서 투자 후 A펀드는 원가법으로, B펀드는 공정가치 평가값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

- A펀드 : 취득원가 10억원, B펀드 : 공정가치 15억원

⇒ A펀드 10억원, B펀드 15억원으로 기재

Q18.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

- 본 사업은 10년 이내의 장기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출자목적 이해도, 장기적인 출자능력 등을 보유한 자가 출자 가능함
- 국내 기관투자자, 법인이 원칙이며,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 타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신탁 등), 해외출자자 등은 주관기관 앞 사전협의 등을 통해 가능
 - * 펀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이 특정금전신탁 등의 방식으로 출자 불가

해외출자자는 아래 서류 구비 필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출자자의 사업자 등록증(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
- 출자자의 인감증명서(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
- 이사회 등 LOC 발급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
(단순 출자여부 뿐만 아니라, 주목적 투자를 비롯한 주요 펀드결성조건, 국내법에 근거한 펀드 출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표이사 여권사본(기타 신원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최근년도 연차보고서 등 출자자(회사)개요 자료, 최근 3개년 외부감사받은 감사보고서
- 기타 출자자 및 출자여부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상기 자료들은 국문으로 번역 및 공증 필요하며, 추가 확인자료 요청 가능

지방자치단체 출자시 LOC발급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 제출 필요

Q19.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

- 투자기구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출 방식 펀드 운용은 허용하지 않음

Q20. '24년 1차 사업 선정 운용사가 '24년 2차 사업(예정)에 지원 가능한지?

- '24년 1차 출자사업 선정된 운용사는 '24년 2차 출자사업에 지원불가

Q21.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허용하는지?

-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따라 투자 가능함
 - 단, 주관기관별로 펀드의 중복투자 현황 모니터링 예정

Q22.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

- 사전 협의시 제한적으로 가능함
 - 혁신성장펀드 조성 취지 및 목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정책기관 등이 요청하는 주목적 투자 대상 추가 가능하며, 주관기관 앞 사전협의 필수

Q23. Co-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

- 공동 운용사 전체 기준으로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실사시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엑셀양식 4.2)

Q24.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회수금액 기재 방법은?

- SPC 기준이 아닌, 투자기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사항 셀에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한 투자임을 기재 (엑셀양식 2.6, 3.2)
 - 아울러, 하나의 SPC에 복수의 펀드 등이 출자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한 경우, 전체 금액이 아닌 제안사 작성 대상 펀드 (운용인력) 기준으로 기재

Q25. 우선선정 분야 선택시 선발방식은?

우선선정 분야를 추가 선택한 운용사를 우선하여 선정

예시) 3개 운용사 선정 공모사업에 6개 운용사 참여 (3개사 선택형 제안시)

① 평가순위상 D사는 4위로 탈락이나, 우선 선정 대상이므로 D사가 1순위로 선정, C사가 탈락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선택형 채택	×	×	×	○	○	○
평가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선정순위	2순위	3순위	탈락	1순위	탈락	탈락

② 선정된 E사(선택형 제안)는 우선 선정 대상은 아니나, 펀드 결성시 선택형을 정관 등에 반영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선택형 채택	×	×	×	○	○	○
평가순위	2위	4위	5위	1위	3위	6위
선정순위	2순위	탈락	탈락	1순위	3순위	탈락

Q26. 순수해외투자자와 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의 차이는?

순수해외투자는 순수 비거주자 앞 투자를 지칭하며, '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를 제외한 해외투자임

*** 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 예시**

- 가. 국내기업이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외국기업
- 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외국에 공동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
- 다. 회사(펀드)가 국내기업(SI)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
- 라.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 유치 또는 사업의 외국진출을 위해 해외로 법인을 전환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단, 국내에 사업장과 인력 유지, 내국인이 경영권을 보유)
- 마. 전체 고용인력 대비 한국 내국인 고용률이 50% 이상인 외국기업
- 바. 국내기업과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

Q27. 주목적 투자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정의는?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규모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규정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상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
- *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함

Q28. 성장지원펀드에서 주목적 투자비율 중 '기업당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의 의미는?

- Follow-on 투자 합산이 아닌 건별 투자금액이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인 투자건이 목표결성액의 20% 이상 되어야 함

Q29. 민간출자자 희망시 인센티브 제공 민간출자자 범위에서 제외 가능한지?

- 민간출자자 희망시 인센티브 제공 민간출자자 범위에서 제외 가능함 ('후순위 보장' 인센티브에 限)

Q30. 주목적 투자비율 계산방법?

※ 주목적 투자 비율 완화 예시

- 목표결성액 1,000억원인 운용사가 1,500억원을 결성하였을 경우, 주목적 의무 투자액 800억원

구분	총결성액	목표결성액	초과결성액
		결성액	1,500억원
주목적 투자비율	53%	60%	40%
의무 투자액	800억원	600억원	200억원

Q31. 최다출자자의 정의?

- 정책출자자(정부재정 + 산은 + 성장사다리펀드2*)의 출자금 총액을 초과한 출자자 중 제안펀드와 병행펀드 합산하여 최다출자자 1곳
* 혁신산업펀드 지원시

Q32. 병행펀드 구조 고려시 제안서에 기재 여부?

- 병행펀드 구조 고려하는 운용사의 경우, 제안서에 운용 사유, 주요 세부 운용 조건, 결성 예정일 등을 명시 필요
(한글 제안서 內 ‘VII. 펀드 제안사항 및 기타의 3.기타사항’ 에 기재)

Q33. 병행펀드 결성일은 반드시 제안펀드보다 앞서야 하는지?

- 병행펀드 결성일은 제안펀드 결성일보다 늦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제안펀드 결성일보다 늦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병행펀드가 정책출자자가 참여한 제안펀드의 주요 운용 조건에 불리한 변경사항 혹은 중요한 변경사항을 초래할 경우, 병행펀드 결성은 불가함
해외출자자 모집에 따른 병행펀드 결성시, 해외출자자 모집 기한 내에 결성 완료해야 함